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캠퍼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타워 7F, 8F
www.ssif.or.kr

안전한 캠퍼스, 든든한 대학 지킴이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안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2007년 설립한 기관입니다. ”

공제중앙회 주요업무

 <p>대학정보공시 항목별 관리 (안전관리계획·안전사고 보험현황)</p>	 <p>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p>	 <p>교육부 학교안전정책 연계사업 지원</p>
 <p>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유·초·중·고 전부 가입)</p>	 <p>재외한국학교 안전공제 사업</p>	 <p>청소년활동 안전공제 사업</p>
 <p>학교안전공제 제도 조사연구</p>	 <p>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p>	 <p>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운영</p>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소개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교장의 법률상 손해배상 및 학생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장점

<p>① 대학 예산 절감 효과</p>  <p>민간 보험사 대비 최소 경비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공제로 제공</p>	<p>② 대학정보공시 연계</p>  <p>‘대학 안전관리계획’ 및 ‘대학보험 가입현황’의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 간소화</p>
<p>③ 수의계약을 통한 효율적 행정 추진</p>  <p>공제중앙회는 국가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p>	<p>④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처리과정 확인</p>  <p>온라인을 통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로 진행상황, 지급 내역 등 직접 확인 가능</p>

참고!

Q 동일 보장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A 민간 대비 학생 1인당 약 740원 ~ 840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기준일자: '23.4.1)

가입 예시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조건)	1인당 공제로		
	중앙회	A보험사	B보험사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2,310원 (예시)	3,050원 (△740원)	3,150원 (△840원)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생 및 신입생 교내치료비] 5백만원(자기부담금 없음)			

※ 학생수 및 가입 사항에 따라 공제로 변동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한도



가입한도

보통약관
특별약관

보장 담보	가입 금액			보장내용
	1인당	1사고당	자기 부담금	
대인배상	1천만원 ~ 7억원	1천만원 ~ 20억원	10만원 ~ 100만원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대물배상	-	1천만원 ~ 20억원	10만원 ~ 100만원	
교내·외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0원 ~ 50만원	학생 상해 치료비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5억원	-	-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 OT 중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0원 ~ 50만원	신입생의 상해 치료비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5억원	-	-	신입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대학 체육특기자 교내·외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10만원 ~ 50만원	대학 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실습생 배상책임	대인	50만원 ~ 5백만원	2만원	현장실습생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대물			
현장실습생 치료비	1백만원 ~ 1천만원		0원 ~ 50만원	현장실습생의 상해 치료비 (산재보상 초과된 손해액 지급)
현장실습생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2억원	-	-	현장실습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대인, 대물) 보장은 필수 가입이며 그 외 보장 특약들은 선택가입 가능

※ 현장 실습생 개인배상책임, 사망후유장해, 치료비 보장 전부 가입만 가능(보장 사항 선택 가입 불가)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범위



공제가입자 및 공제수익자

공제가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총장

공제수익자



대학생, 대학원생, 제3자 등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 대학 총장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총장이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학생이 학교생활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손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유족급여
- 신입생이 학교행사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손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유족급여
- 현장 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로 발생한 신체피해 및 제3자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체육특기자가 학교 시설 내에서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중에 생긴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범위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통약관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가 학교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학교 교직원(강사, 조교 등을 포함)이나 학교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체육특기자의 경우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내용 보장 가능

※ 공제급여의 제한

-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
- 피공제자(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하여 지급

※ 상기 내용은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 참고

● 특별약관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한다) 사고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 상기 내용은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 참고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청구 절차



☞ 공제급여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무처리
피공제자, 제3자	사고 발생	· 대학안전사고발생
대 학	사고 통지	· 대학안전공제 업무처리시스템에 사고통지
공제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중대사고 시 전문손해사정조사사의 현장조사 실시)
피공제자,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 관련 서류 대학에 제출
대 학	공제급여 청구	· 대학안전공제 업무처리시스템에 공제급여청구
공제중앙회	청구 접수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입문의

☎ 1688-4900

✉ daehak@ssif.or.kr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요!

약관, 보상범위 등 변경사항 확인 가능